

보도자료

2010년 7월 29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

가. 주파수정책과 김정삼과장(2270) 나.,다 지상파방송정책과 이영미과장(2430)

2010년 제46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됐음

가. 2.5GHz대역 WiBro용 주파수할당계획(안)에 관한 건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휴대인터넷(WiBro)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, 무선인터넷 활성화 등에 부응하기 위해
- 『2.5GHz대역 WiBro용 주파수할당계획(안)』, 주파수 할당공고,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·부과에 관한 세부사항,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고시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

나. 신규 라디오방송국(FM) 허가에 관한 건

- 신규 라디오방송국(FM) 허가심사 계획('10. 6.30. 위원회 의결)에 따라 관련 방송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,

<허가 신청 법인 현황>

신청인	대표자	신청 방송국명
(재)극동방송	김장환	극동대구 FM방송국
(재)원음방송	김윤겸	원음대구 FM방송국
도로교통공단	정봉채	교통울산 FM방송국
(재)CBS	이정익	CBS부산음악FM방송국

- (재)극동방송의 극동대구FM방송국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울산FM 방송국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하고,

< 허가 조건 >

- 제출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
- 자체심의 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
- 방송편성에서 보도를 제외할 것
-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,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
-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, 주파수 회수, 재배치 등 정부 정책을 준수할 것
- (재)극동방송은 극동대구FM방송국의 철탑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
-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울산FM방송국의 세부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관계기관과 협의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

※ 허가되는 신규라디오방송국(FM)의 출력은 1킬로와트로 하며,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3년으로 함

- (재)원음방송의 원음대구FM방송국과 (재)CBS의 CBS부산음악FM 방송국에 대하여는 201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에 대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조건부 허가 또는 불허를 최종 결정하기로 의결함

< 사업계획 수정 제출사항 >

- 종교방송으로서 허가신청한 주된 방송분야의 60% 이상 편성계획 등
- 광고판매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을 고려, 광고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종교방송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원확보계획

다. KBS 경인 제1TV 방송국 허가심사 계획(안)에 관한 건(첨부 참조)

- 2010년 6월에 접수된 KBS 경인 제1TV 방송국에 대한 허가심사 계획(안)을 심의하여 의결함

<첨부>

KBS 경인 제1TV 방송국 허가심사 계획(안)

□ 심사대상

신청인	신청일자	신청 방송국명
한국방송공사	'10. 06. 16.	KBS 경인 제1TV 방송국

□ 심사기준 및 배점

-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, 기존의 단일 방송구역(서울·수도권)에 포함되어 있던 인천·경기지역을 독립적인 방송구역으로 새롭게 설정하는 신규 허가심사인 점을 감안, 아래 사항을 심사에 중요하게 반영
 - 지역적·사회적·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
 - 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
 -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

심사 항목	배 점 (총1천점)
1.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	150
2. 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	200
3. 지역적·사회적·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	250
4.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	150
5. 재정능력	100
6. 기술적 능력	100
7.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	50
8. 신청법인의 최근 5년간 관련법령 위반사례	감점

※ 세부항목 및 배점, 감점기준 결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

□ 허가여부 결정 기준

-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6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'허가'를 의결하고, 650점 미만일 경우에는 '불허' 또는 '조건부 허가' 의결

□ 허가심사위원회 구성(안)

- 구성방안 : 방송통신위원,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

구 분	구 성 (안)	중점심사분야
위 원 장	방통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	심사총괄
심사위원	방송 분야 1인	-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 등 실현 가능성 - 지역·사회·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
	시청자 분야 1인	- 방송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-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의 적정성
	기술 분야 1인	기술적 능력
	지상파방송정책과장	간사

□ 추진계획

- '10. 8월초~중 : 시청자 의견청취 및 허가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
- '10. 8월말~9월 :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및 허가증 교부. 끝.